

# 금 용 감 독 원

우 150-743 /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/ 전화 3786-8031 / 전송 3786-8038			
처리부서	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팀장	안종식	담당자 <u>신입준</u> 역 <u>최영주</u>
문서번호	은감경 6122 - 00016	일자	2004. 2. 23
발신일자	2004. 2. 19	시간	:
수 신	기획예산처장관	번호	43
참 조	제도관리과장	리 과	제도관리과
제 목	민자사업 대출 등의 위험가중치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	당 자	<u>이정민</u>
		사 자	
			시 결 제 공 략 심 사 일

1. 귀 처의 「민자사업 대출 등의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관련」(제관41341-15, 2004.2.11)에 대한 회신입니다.

2. 「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」에 근거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등 채권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면책사유 없이 지급하는 실시협약 해지 시 정부 지급금의 최소 금액 범위내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간주하여 정부의 위험가중치(중앙정부 0%, 지방자치단체 10%)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### ◆ 인 정 요 건 ◆

- ① 정부와 사회간접자본 민간사업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에 상당권을 설정
- ② 대출기간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보다 단기일 것

# 금 용 감 독 원

우 150-743 /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/ 전화 3786-8031 / 전송 3786-8038			
처리부서	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팀장	안종식	담당자 <u>이정숙</u> / 직역 <u>차장</u> / 처명주
문서번호	은감경 6122 - 00016	일자	2004. 2. 23
발신일자	2004. 2. 19	시간	:
수 신	기획예산처장관	번호	43
참 조	제도관리과장	리 과	제도관리과
제 목	민자사업 대출 등의 위험가중치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	당 자	<u>이정숙</u>
		사 자	심사일

1. 귀 처의 「민자사업 대출 등의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관련」(제관41341-15, 2004.2.11)에 대한 회신입니다.

2. 「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」에 근거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등 채권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면책사유 없이 지급하는 실시협약 해지 시 정부 지급금의 최소 금액 범위내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간주하여 정부의 위험가중치(중앙정부 0%, 지방자치단체 10%)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### ◆ 인 정 요 건 ◆

- ① 정부와 사회간접자본 민간사업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에 저당권을 설정
- ② 대출기간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보다 단기 일 것